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공장이전에 따라 시험검사설비도 함께 이전하게 되어 검교정주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어도 검교정을 다시 시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시험검사계측계량기기 모두를 검교정할 필요는 없고 이동으로 인한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기기만 검교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시 다시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시험설비의 정의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시험설비의 정의로 보여집니다 “검교정”을 우선 “교정”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주셔야하며, 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시험설비는 공장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측기 또는 측정기로 볼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교정의 필요성은 측정기 또는 계측기가 정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온도, 습도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질 때 재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업체가 제조하려는 제품 중 라디오수신기(주방TV오디오)에 형광램프가 추가된 제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 중에서 어떤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형광램프가 없는 기존의 제품은 라디오수신기(주방TV오디오)로 받아 왔습니다. 또한 본 제품에는 형광등 용안정기가 제품의 전원보드와 같이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정기만 별도로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에만 맞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이어서 특별한 인증을 받은 안정기는 아닙니다. 즉 PCB보드 형태로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조명기기 시험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기존의 라디오에 일반 형광등기구가 결합되어 새로운 구조의 복합제품을 만든 경우, 각각의 안전기준(라디오, 형광등기구)를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으셔야하며 품목은 주요기기로 분류됩니다. 이때, 표시는 주요기기(점용기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받은 라디오에 어떤 형광등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구조도 또는 사진 등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